

영업배상책임보험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선택에 성실히 보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 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는 즉시 가능)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 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3.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영업배상책임보험

[목 차]

보통약관	6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7
제1조(목적)	7
제2조(용어의 정의)	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
제3조(보상하는 손해)	10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10
제6조(보험금의 청구)	11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1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2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12
제10조(보험금의 분담)	13
제11조(손해방지의무)	13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4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14
제14조(대위권)	1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5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15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15
제16조2(양도)	16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16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6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16
제19조(청약의 철회)	17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8
제21조(계약의 무효)	19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9
제23조(조사)	19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20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0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20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1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1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2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2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23
제30조(계약의 해지)	23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4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4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24
제34조(보험료의 환급)	2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6
제35조(분쟁의 조정)	26
제36조(관할법원)	26
제37조(소멸시효)	26
제38조(약관의 해석)	26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6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7
제41조(개인정보보호)	27
제42조(준거법)	28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8
특별약관	29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30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31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2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33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34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37
비행 추가특별약관	39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41
세차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추가특별약관	43
자동차검사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추가특별약관	45
귀중품 재추가특별약관	46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47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48
선박보상 추가특별약관	49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50
산업융합촉진법 추가특별약관	51
지역특구법 추가특별약관	53
도급업자 특별약관	55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58
일부 공사 추가특별약관	59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60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61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2	62
업무 중 재물 파손 담보 추가특별약관	63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64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67
신입생 추가특별약관	69
주차장 특별약관	71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74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77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81
바के트/그래브사고 추가특별약관	85
화재위험 추가특별약관	86
항만하역위험확장 추가특별약관	87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88
화재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91
도난위험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92
화재위험만의 추가특별약관	93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94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95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98
귀중품 추가특별약관	100
동주택 추가특별약관	101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관	102
경보·기계설비의 고장 추가특별약관	103
수송경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104
전기적사고 화재, 폭발 손해 보상 추가특별약관	105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106
근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109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111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114
유리제품 추가특별약관	116
하청업자 배상책임특별약관	117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120
인격침해 특별약관	123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124
구외보트 추가특별약관	126
임차자 특별약관	127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130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133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34
적용환율 특별약관	136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37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138
공동인수 특별약관	139

티끌, 먼지 및 소음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140
포괄계약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141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Ⅱ)	143
공동비율 특별약관	146
단체계약 특별약관	147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150
제재위반 부당보 특별약관	152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153
공동비율 특별약관(Ⅱ)	154
제재위반 부당보 제외 특별약관	155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156
특별약관 색인	159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장지역: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나)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바.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사.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아.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자. 공해물질: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차. 테러: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관련 용어

가. 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가)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

나) 그레이더,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가)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나)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가)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나)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다)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 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6조2(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에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에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5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의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1.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조: 용도 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업무내용	시설 내의 업무: 시설 밖의 업무:

구내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	---

비행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행하는 아래에 기재된 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얼굴 주름살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불필요한 머리칼을 제거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전기광선 기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숙련자의 감독하에 2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가연성 빛의 화재, 열 혹은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가연성 드라이 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명칭 : 용도 : 구조 :
------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업무내용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땀,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내용	명칭: 용도: 수량: 설치장소:
업무내용	업무명: 관리자 :
보상한도액	

세차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 추가특별약관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세차장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받은 자동차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손실에 따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사용손실에 따른 간접손해는 렌트비용에 한합니다.

【렌트비용 용어설명】

렌트비용은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며, 렌트비용의 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의 대차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위 ①, ② 조항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조 (준용규정)

이 재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검사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 추가특별약관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검사장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받은 자동차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손실에 따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사용손실에 따른 간접손해는 렌트비용에 한합니다.

【렌트비용 용어설명】

렌트비용은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며, 렌트비용의 보상한도는 계약시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 인정기준액 중 '대차를 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재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귀중품 재 추가특별약관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아래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및 물적 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은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장애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건물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물이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임차인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냉동 또는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직접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선박보상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에 기재된 체험활동 또는 행사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생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 가입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을 아래의 사항으로 대체합니다.

1.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나.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제1호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과 제1호 '나'목에 따른 한도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과 제1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제1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3.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지역특구법 추가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에 의거한 실증특례사업 또는 제90조에 의거한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 가입하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을 아래의 사항으로 대체합니다.

1.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고일 기준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 (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을 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고일 기준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하나의 사고로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조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과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호 '나' 목에 따른 금액과 제1호 '다'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다. 제1호 '다' 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에서 제1호 '다' 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3.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다.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 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20.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전체작업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소재: 구조 및 용도: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웅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일부 공사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보험자의 공사현장 주위에 있는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는 타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작업용 기계, 장비, 도구 등이 입은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단, 석면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소급보장일자)

본 추가특별약관은 아래의 소급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급일자: 년 월 일

제3조(손해배상의 청구)

본 추가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 ② 어느 하나의 사고(1회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2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 및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작업용 기계, 장비, 도구 등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계, 장비, 도구 등에 대한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 직·간접적 원인에 관계없이 기계, 장비, 도구 등의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 그 자체와 그러한 흠,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인해 발생한 손해
3. 바람, 비, 눈, 우박, 모래먼지 등이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와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시위, 노동쟁의 및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5. 전기적 사고로 생긴 전지전자기기 및 장치의 손해
6. 기계, 장비, 도구 등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별도의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 다만 이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 별도의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의 초과분에 대하여 상기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액을 적용하여 보상함

업무 중 재물 파손 담보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0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 (이때 업무수행과정은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에서 언급한 통제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에서 파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흠, 번색, 마모 찢어짐, 줄어듦, 점진적인 품질하락 등 피보험자가 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
2. 작업 후 발생하는 수리(점검 포함), 불완전 시공, 마무리 불량 등 피보험자가 행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3. 작업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을 벗어난 피보험자의 잘못된 인식 또는 판단으로 야기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 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2.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

- 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명칭: 소재지: 구조 및 용도: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

※용어풀이

학교업무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	--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	---

신입생 추가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반드시 학교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육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신입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입생	신입생이라 함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입한 자로서, 학교가确定的한 자를 말합니다.
-----	---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3.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4.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사용 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업무내용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5.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조: 용도: 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업무내용	시설 내의 업무: 시설 밖의 업무: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선박수리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작업장에서 100마일 이내의 해면에서 시험 운항하는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시험 운항 중이 아닌 항해중의 선박을 제외하고 위 이외의 피보험자가 수리작업 중인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선박에 적재된 또는 하역되어 있는 화물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4. 수리의 목적으로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 중 생긴 기계, 장치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피보험자의 구내와 선박간 또는 피보험자의 구내와 전문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구내간 운반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6. 피해자의 신체의 장애를 입히는 사고
7. 잔해의 제거 중 발생하는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제1조(사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설계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충돌배상책임, 예인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방계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합니다)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피보험자가 보관만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선박 또는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유조선 또는 폭발, 가연성의 액체나 가스를 수송하였던 선박 및 유연선박의 연료탱크, 파이프나 그 옆에서 작업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의 법규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에 가스제거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에 회사가 지정하는 검정회사로부터 가스제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9. 피보험자가 건조중인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0. 제1조(사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손해에 관하여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1. 선박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90일 또는 작업이 종료된 후 90일(둘 중에서 먼저 도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내에 발견되고 회사에 통지되지 않은 제1조(사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2. 회사의 배서에 의한 동의없이 수행한 선박의 용적, 선복량 또는 선형의 변경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3.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파괴, 압수, 몰수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시설종류: 권리관계:
업무내용	시설 내의 주요업무 및 부수업무: 시설 밖의 업무: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부두구역 내에서 하역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물

- 건 이외의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근로자(임시로 고용한 항만노조 조합원을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부두구역 내에서의 하역작업은 제외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하역화물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위험품 취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하역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선박의 관리, 절단, 낫땀질, 단접, 납땀질, 모든 열작업 등 선박의 수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자연마모, 부식, 부패, 녹,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고철의 하역, 선적 또는 전자석, 그레브, 바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실, 손해 또는 근로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강도, 절도, 도난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2. 색깔 및 향기의 변질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부두구역을 벗어나 공로를 운행하는 중 발생한 운송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4.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5. 선박사고로 생긴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하역화물 기타 선박 등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 4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항만운송 사업법 제3조에 따릅니다. 그러나 부두 구역 밖의 하역은 제외합니다.

제 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두명 :
소재지 :
범 위 :
구 조 :
하역작업내용 :

바케트/그레브사고 추가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철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전자석, 그레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선적 또는 하역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 위험 추가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입힌 하역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항만하역위험확장 추가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사고 외에 아래에 기재된 항만해역 내(항만내의 해상, 접안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의 하역작업의 수행 또는 하역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용어추가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항만해역 내에서의 하역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항만명:

소재지:

범 위:

하역시설:

하역작업내용:

창고업자 특별약관(1)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 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제1호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

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이상일 때: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미만일 때: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재고가액의 80\%}}$$

② 제1항의 재고가액이라 함은 계약체결 전 1년간의 매월 말 전체재고가액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참고) 1) 참고명칭: 2) 참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3) 위치: 4) 참고의 구조: 5) 참고의 면적: 6) 야적장 면적: 7) 소화설비내용: 8) 관리관계: 9) 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수탁물 1) 수탁물의 종류: 2) 보세화물 보관여부: <input type="checkbox"/> 수입화물 <input type="checkbox"/> 수출화물 3) 수량: 4) 보관기간: 5) 위탁자 성명: 6) 위탁자 주소:
참고약관(요약):

화재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 보상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 1) 수탁물의 종류:
- 2) 수량:
- 3) 보관기간:
- 4) 위탁자 성명:
- 5) 위탁자 주소:
- 6) 기타:

도난위험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참고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도난, 강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난위험보상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 1) 수탁물의 종류:
- 2) 수량:
- 3) 보관기간:
- 4) 위탁자 성명:
- 5) 위탁자 주소:
- 6) 기타:

화재위험만의 추가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만의 추가특별약관(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 1) 수탁물의 종류:
- 2) 수량:
- 3) 보관기간:
- 4) 위탁자 성명:
- 5) 위탁자 주소:
- 6) 기타: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참고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이 6시간 미만 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 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창고업자 특별약관(II)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1항 제1호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 4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 1) 창고명칭:
- 2) 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3) 위치:
- 4) 창고의 구조:
- 5) 창고의 면적:
- 6) 야적장 면적:
- 7) 소화설비내용:
- 8) 관리관계:
- 9) 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수탁물

- 1) 수탁물의 종류:
- 2) 보세화물 보관여부: 수입화물 수출화물
- 3) 수량:
- 4) 보관기간:
- 5) 위탁자 성명:
- 6) 위탁자 주소:

창고약관(요약):

경비업자 특별약관(1)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수송경비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행사, 경기, 흥행 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당사자	경비대상	소재지	경비원수	비고

귀중품 추가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1)(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에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동주택 추가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1)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1)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경보·기계설비의 고장 추가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1)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수송경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1)에 적용)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경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경비업무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 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정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정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	--

전기적사고 화재, 폭발 손해 보상 추가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경비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비업무와 관련된 시설로 인해 발생한 전기적사고로 인한 화재, 폭발 손해에 한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경비업자 특별약관(II)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체결한 보안경비업무 청부계약(이하 경비계약이라 합니다)에 의거한 보안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타인(경비업무 위탁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현금,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12.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경비업무 수행 외에 발생한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
19. 피보험자(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의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경비업무 위탁자(USER)로부터 수탁 받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마스터 키와 일체로 되어있는 자물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20.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부정행위
22. 피보험자의 경비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경비업무가 종료한 후에 발견된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단, 도난 및 도난에 수반되는 망그러뜨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3. 피보험자의 경비계획서 또는 협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보험자의 부작위
24. 경비업무 위탁자의 영업시간 중에 발생한 절도, 소매치기, 줌도둑(남의 물건을 사는 체하고 훔치는 것) 및 기타 불법침입이 아닌 자의 부정행위
25. 매각기기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기기설치 작업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7.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경비업무	<p>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 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정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정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 연락선에의 긴급연락
------	---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설치장소: 대수: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이하 중기라 합니다.)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토지의 내려앉음, 용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러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중기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기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1.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중기명세	중기명: 등록번호: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기타: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땀,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

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내용	명칭: 용도: 수량: 설치장소:
업무내용	업무명: 관리자수:
보상한도액	

유리제품 추가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의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와 그 제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해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증권상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및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하청업자 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관 및 가공하는 물건(이하 임가공물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금,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임가공물의 가공 착수 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 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제1호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미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재고가액의 80\%}}$$

② 제1항 임가공물의 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 5조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조(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소재: 구조 및 용도: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작업내용: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피해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오염 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 작업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않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하여도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명칭: 구조: 용도: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

업무내용	
------	--

구외보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여객운송이나 유람, 관광 또는 도하이외의 목적으로 소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보트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트명	건조년도	재질	정원	기관의 명칭및 구조	성능 및 톤 수	권리관계	운항구간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쏘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부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 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고서, 검정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함한 전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인이 사용 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다.
17.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작업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작업물건) 또는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작업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20. 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

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사항:
계약명칭:
계약당사자:
성 명:
계약기간:
계약내용: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4.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임금: 보험증권 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 나. 영수금: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영수한 총 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 다. 매출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 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정산요율 : 보험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보험료:

최소보험료: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회에 분할 하여 회사에 납니다.

제2조(나뉘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뉘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뉘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2회: 청약일 후 5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2회: 청약일 후 2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3회: 청약일 후 5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4회: 청약일 후 8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3. 상기 1. 2.의 분납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공사(公社)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에 기재된 납입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뉘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제2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제2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제3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4회 :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3. 해지 환급보험료: 해지일
4.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티끌, 먼지 및 소음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티끌, 먼지, 분진, 소음 및 악취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석면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소급보장일자)

본 추가특별약관은 아래의 소급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급일자: 년 월 일

제4조(손해배상의 청구)

본 추가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 ②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포괄계약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정기간(이하 '포괄계약기간' 이라 합니다)동안 피보험자가 증감할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추가되는 피보험자 별 운영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정산)

- ① 포괄계약기간 보험 개시 전에 최소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기간 동안 매월 변동된 개별 피보험자 및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된 보험조건을 익월 5영업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료를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며, 계약자는 보험료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전월5의 확정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5 영업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일 전일까지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포괄계약기간 종기 후 7영업일 이내에 계약자는 제1항에 의거 해당 월의 변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정된 보험료와 제1항에 의거 납입한 최소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단, 포괄계약기간 동안의 총 보험료가 최소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⑤ 각각의 피보험자 별 보험료 정산 시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그 약관에 따른다.

제3조(보상기간)

- ① 제2조 제2항에 의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통보된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기준으로 보험 사고를 보상합니다. 단, 제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자가 매월 보험회사에 성실히 통지 하였으며, 보험자로부터 보험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유효 합니다.
- ② 제2조 제2항에 의거 보험기간이 종료한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되기 전일 경우에도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II)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 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5.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피보험자의 종업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조: 용도: 면적: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기타:
업무내용	시설 내의 업무: 시설 밖의 업무:

공동비율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회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보상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비율만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 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

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 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 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기타 재보험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조건은 본 재보험 계약에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1. 원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청구 가능성을 통지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 시킬 만한 상황을 통지 받은 경우, 재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재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합의, 절충 및 중재를 통제하기 위해 조정인 또는 대리인을 임명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4. 재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이뤄질 수 없으며, 배상책임여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비율 특별약관(II)

제1조(책임의 분담)

회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보상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비율만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방법)

- ① 위 제1조(책임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공동비율만큼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익월 5일까지 안내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5일 또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의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협의를 통해 정산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 실제 지급일로부터 위 2항 또는 3항에 서 정한 납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년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제외 특별약관

회사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과의 수출입, 유형자산의 운송 또는 금융자산의 거래행위가 아래 품목과 관련된 제재사항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유럽연합의 통상장벽규칙 1283호(2009), 689호(2009), 389호(2009), 329호(2007)의 제재사항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i)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에서 정의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ii)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채택 후 14일 이내에 제재위원회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iii) 사치품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드론 및 그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농약 등 기타유해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드론의 수리 및 개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0장(초경량비행장치)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을 포함하여 항공안전법,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1. 드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배송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드론의 도난, 분실, 해킹 후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드론을 사용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군사용 또는 불법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군사용이라 하더라도 드론에 탑재(또는 적재)된 무기의 사용(또는 작용)에 기인한 사고를 제외한 작전, 정찰, 훈련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5. 심신상실자의 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6. 항공안전법상 등록,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항공안전법상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7. 드론을 유상으로 운송업에 사용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드론을 이용한 시합이나 경기, 에어쇼, 곡예비행 등 위험한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미성년자가 드론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보호자의 감독하의 비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관계법령의 개정)

보험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릅니다. 단, 개정법령으로 인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드론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제5호]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 제5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하며, 항공안전법상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정의에 따릅니다. 단, 소형카메라 등을 포함하여 드론에 장착된 부속장비는 드론의 일부로 보며, 드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배송물은 드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운송업	유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배송물을 운송하는 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사업법 제2조 제21호 및 제26호]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제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 제26호]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2.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해주는 서비스 3.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특별약관 색인

<기호 및 숫자>

해당없음

<ㄱ>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33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111
경보·기계설비의 고장 추가특별약관	103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98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106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130
곤도라 운전자 특별약관	109
공동비율 특별약관	146
공동비율 특별약관(Ⅱ)	154
공동인수 특별약관	139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138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37
구외보트 추가특별약관	126
귀중품 재추가특별약관	46
귀중품 추가특별약관	100

<ㄴ>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30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94

<ㄷ>

단체계약 특별약관	147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137
도급업자 특별약관	55
도난위험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92
동주택 추가특별약관	101
드론배상책임 특별약관	156

<ㄹ>

해당없음

<ㅁ>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41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114

<ㄴ>

바케트/그래브사고 추가특별약관85

발주자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120

보험료분납 특별약관134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150

보험료정산 특별약관133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48

비행 추가특별약관39

<ㄷ>

산업융합촉진법 추가특별약관51

선박보상 추가특별약관49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77

세차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추가특별약관43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153

수송경비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104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34

신입생 추가특별약관69

<ㄹ>

업무 중 재물 파손 담보 추가특별약관63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관102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124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47

유리제품 추가특별약관116

인격침해 특별약관123

일부 공사 추가특별약관59

임차자 특별약관127

<ㅈ>

자동차검사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추가특별약관45

적용환율 특별약관136

전기적사고 화재, 폭발 손해 보상 추가특별약관105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31

제재위반 부담보 제외 특별약관155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152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50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60

주위재산 추가특별약관262

주차장 특별약관	71
지역특구법 추가특별약관	53

<㉞>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74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II)	143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88
창고업자 특별약관(II)	95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67

<㉟>

해당없음

<㊱>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2
티끌, 먼지 및 소음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140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61

<㊲>

포괄계약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141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58

<㊳>

하청업자 배상책임특별약관	117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64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81
항만하역위험확장 추가특별약관	87
화재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91
화재위험 추가특별약관	86
화재위험만의 추가특별약관	93

삼성화재 전국 고객지원센터 주소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북고객 지원센터	[0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2층 (용두동)	1588-5114
	강남고객 지원센터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4. 삼성화재 역삼빌딩 12층 (역삼동)	
	강서고객 지원센터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6. 삼성화재 영등포사옥 1층 (양평동 4가)	
경기	경기고객 지원센터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 수원사옥 3층 (인계동)	
대전	충청고객 지원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10층 (둔산동)	
광주	호남고객 지원센터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상무사옥 1층 (치평동)	
대구	대구고객 지원센터	[420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 대구사옥 3층 (범어동)	
부산	부산고객 지원센터	[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화재 부산초량사옥 2층 (초량동)	

※ 전국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통보 및 접수는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 혹은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588-5114 | samsungfire.com